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회)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운영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통신의 근거 마련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이 제정(법률 제18206호, '21.6.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활용계획 수립·시행 사전협의 대상기관(안 제2조, 제3조)

- 1) 법률에 규정한 사전협의 대상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외 시행령에 국방부장관을 포함
- 2) 활용계획 수립·시행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지자체, 소방청, 해경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산림청,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의 기관으로 정함

나.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센터 설치(안 제5조)

- 1) 재난안전통신망의 설비 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 근거 마련
- 2) 「전파법」에 따른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 기준 준수

다. 전기·무선·재난안전 통신설비의 공동이용(안 제6조부터 제9조)

- 1) 전기통신설비(회선 및 시설), 무선통신설비(기지국 등) 및 재난안전 통신설비(철도망, 해상망 등)의 공동이용과 접속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이용 대가 정산 근거 마련

라. 건물·토지 출입 증표, 협의대상 인공구조물 및 제거 공고(안 제10조부터 제13조)

- 1) 통신설비의 설치·보수를 위해 토지 등의 출입을 위한 증표 및 토지 사용을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시·군·구 게시관 및 홈페이지에 공고
- 2) 협의대상 인공구조물과 제거 시 공고 방법에 대한 명시

마. 재난통신망 사용, 사용절차, 재난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상호운용성 확보, 업무의 위탁, 손실보상, 과태료 부과 등(안 제14부터 제20조)

- 1)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한, 사용 절차에 따른 주기적 훈련 실시
- 2) 재난안전통신망과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를 연계한 서비스 제공
- 3) 공공통신망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 4) 재난안전통신망기술, 재난안전대응절차 연구·개발 등 업무를 위탁
- 5) 토지 등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절차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2조(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또는 사업의 시행 일정·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단순한 문구 수정 등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제3조(재난안전 관련기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3.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나. 보건복지부

다. 경찰청

라. 산림청

마.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설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철도의 정보통신설비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계를 요청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설비

제5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관리)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은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③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재난안전통신망과 상호운용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제공과 업무협약 체결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을 의미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용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전기통신설비 등의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제공과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과 업무협약 체결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상대방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시정 요구 또는 공동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공동사용중인 무선통신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공동이용중인 무선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장애 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장애의 복구 및 비상대책을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이용하는 경우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정보통신 관련 법령에 허가 등이 된 역무 및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는 경우 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접속하는 설비의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

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기술정보의 제공)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관련 자료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 방식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정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변경된 기술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정보의 제공 절차, 방법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건물과 토지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토지 등의 사용 목적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의 사용을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2. 사용 장소
3. 사용기관명, 주소 및 연락처
4. 그 밖에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12조(협의대상 인공구조물 등의 종류)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고, 이를 제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의 공작물 등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공작물 등
3. 기타 시·도지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보호물·보호수 및 보호지역 안의 공작물 등

제13조(인공구조물 등 제거의 공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공구조물 등이 방치된 현장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공구조물 등의 명칭 및 내용
2.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3. 인공구조물 제거 사유
4. 철거 예정일시 및 방법

제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4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신 속도, 통신망 접속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하였을 때는 해당 재난안전 관련기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자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 상호운용성·보안성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현장상황별, 기관별에 맞게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재난안전대응 절차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

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 등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재난관리정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재난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서비스

제17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응 절차의 연구·개발
2. 법 제23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 및 발전
3. 정보통신 신기술을 통한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 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4.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 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와 그 증명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 방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③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20조(과태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
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
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만원)
가.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 설비 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 안전통신을 방해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	5,000
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관련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	3,000
다.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술정보 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한 경우	법 제27조제3항	2,000
라.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 의 설치보수 또는 조사측량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경우	법 제27조제3항	2,000
마.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난 안전통신의 비 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경우	법 제27조제3항	2,000
바.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설비를 더럽히고 손상하거나 표지물 등을 훼손한 경우	법 제27조제4항	300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사진 (2.5cm × 3cm)	① 소 속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위 사람은 「재난안전통신망법」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타인 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60mm×90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④출입 목적	
⑤출입 지역	
⑥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유의사항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재난안전통신망법」에 의한 직무를 행할 때에는 이 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손실을 입은 시기			
손실을 입은 장소 내용			
손실의 내용			
손실액(내역 및 산출 방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제1항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청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연 락 처	(02) 2100 - 0171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의견 청취 및 심리	→	결정	→	결정서 송달
청구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청구인

210mm×297mm[백상지 80g/㎡]